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의결사항

약 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임 채 민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1. 의결주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로 하여금 소속 회원의 법령위반·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법률 제10788호, 2011. 6. 7. 공포, 2012. 6. 8. 시행)에 따라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9조의2, 제9조의3 신설)

1) 약사법 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윤리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명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소속 약사 또는 한약사의 법령위반·윤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약사회장 또는 한약사회장 등이

회의를 소집하여 자격정지처분 요청 여부를 의결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제6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4명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1. 경력 10년 이상인 약사회 또는 경력 5년 이상인 한약사회의 회원
2. 사회적 덕망을 갖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1명을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약사회장이나 한약사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79조의2에 따라 약사회장이나 한약사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해당 심의일시, 장소, 이유 및 근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별표 3의 제4호의2 및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4의2. 법 제37조의2(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4의2	50만원
8의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4의2	50만원

별표 3 중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제6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4명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1. 경력 10년 이상인 약사회 또는 경력 5년 이상인 한약사회의 회원 2. 사회적 덕망을 갖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1명을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약사회장이나 한약사회장 또는 재적위

	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79조의2에 따라 약사회장이나 한약사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해당 심의일시, 장소, 이유 및 근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7352